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2호 2020. 5. 8(금)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0-70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939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남원시 공고 제2020-945호 도로지정공고 ----- 9

예 규

- 남원시 예규 제24호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일부개정지침 -----10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0-70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08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산47
 - 나. 사 업 량 : 4,950m²
 - 다. 사업기간 : 2020. 05. 31. ~ 2021. 04. 30.
 - 라. 사업시행자 : 전남 영*군 *호읍 *색로 *14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0-939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18. 6. 29.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시행 2018. 8. 1.)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생활이익 간 조정을 위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안 제20조의2제4항제3호)

-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나(수익적 성격)
- 이격거리 내 입지제한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의 100% 동의와 해당 마을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침익적 이해관계인 보호

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른 과태료 규정(제84조) 삭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16), 직접방문, 남원시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폭원이”를 “너비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의 100% 동의와 해당 마을주민의 80% 이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자(경작자 포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84조를 삭제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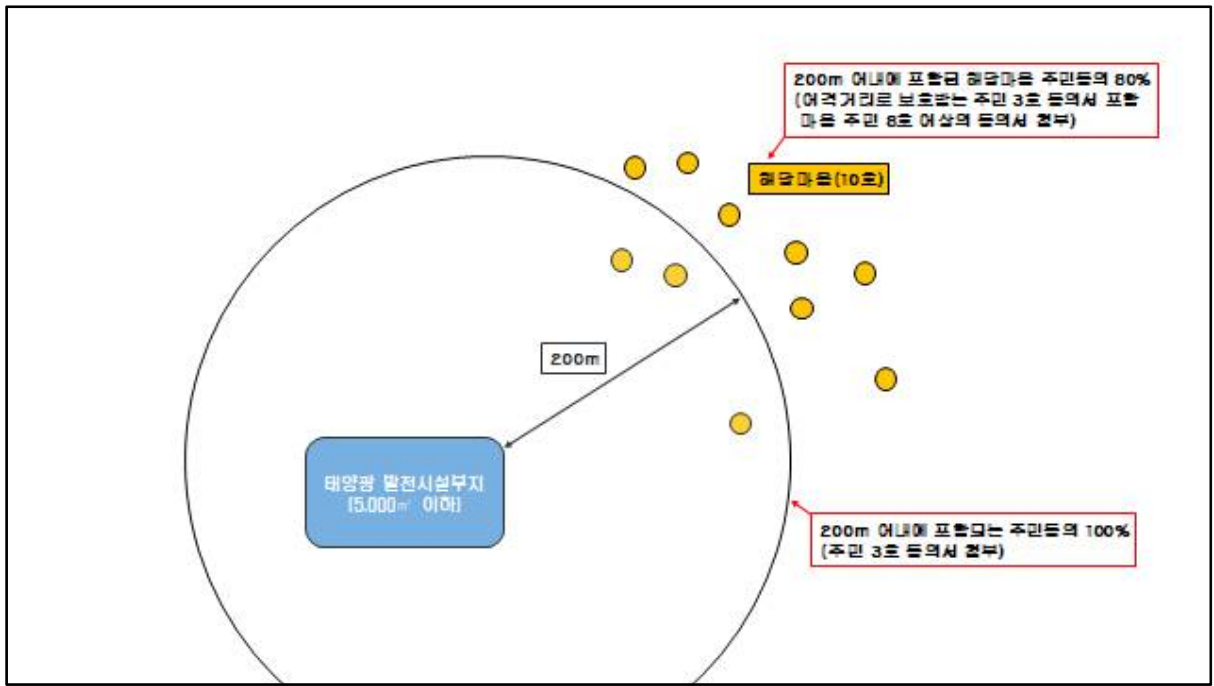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9]

1. 주민동의 대상선정 방법(제20조의2제4항제3호 관련)

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받는 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을 포함한 해당마을 주민의 80%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주민동의 대상선정 방법(예시)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p> |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 ----- -----</p> |
| <p>1. 포장면 폭원이 6미터 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p> | <p>1. ---- <u>너비가</u> ----- ----- ---</p> |
| <p>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p> | <p>2. ----- <u>「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u> ----- ----- -----</p> |
| <p>3. ~ 5. (생략)</p> | <p>3. ~ 5. (현행과 같음)</p> |
| <p>② · ③ (생략)</p> |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 <p>④ ----- ----- -----.</p> |
| <p>1. · 2. (생략)</p> | <p>1. · 2. (현행과 같음)</p> |
| <p><신 설></p> | <p>3. 2018년 8월 1일 이전에 「<u>전기사업법</u>」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의 100% 동의와 해당 마을주민의 80% 이</p> |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

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자(경작자 포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삭 제>

의 견 제 출 서

| | |
|------------|-----------------|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
|------------|-----------------|

| | | |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20 - 945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 지정 번호 | 대 지 위 치 | 건축주 성 명 |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 도로 길이 (m) | 도로 너비 (m) | 도로 면적 (㎡) | 이해관계인 | | |
|-------------|-------------------------------|------------|-----------------------|-----------------|-----------------|-----------------|---|-------------|-------|
| | | | | | | | 지 번 | 편입면적 (㎡) | 토지소유자 |
| 2019-3 5 | 남원시 이백면 효거리525(임) 외 3필지 | 장*규 | 2019-건축과- 건축신고-414 | 167.9 | 7.6 | 1,288 | 남원시 이백면 | 1,049 | 장*규 |
| | | | | | | | 효거리 420-2, 420-1, 531, 525, 526-1 | 239 | 안*영 |
| | | | | | | | 남원시 이백면 효거리 530 | | |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5월 8일

남원시 예규 제 24 호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일부개정지침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체납액 징수의 권한과 책임) ① 제4조에 따라 해당 부서장과 재정과장이

사무인계인수를 했더라도 재정과장은 해당 부서장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장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② 해당 부서장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자 중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나 해제, 각종 인·허가의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외대상) ①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송계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건 신청이 개시된 경우
3. 납부기한 만료 후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4. 교부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공매가 신청된 경우
5. 부과 취소 대상이거나 착오 부과된 경우
6.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7. 납세자 등록번호가 없는 등 부과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과목은 인계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 채권관리관이 관리하는 채권
2.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3. 해당 부서장이 체납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회계과목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체납액 징수업무 연속성 유지) ① 해당 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외수입 부과 및 이관하지 않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업무소홀로 인하여 방치·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이관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민원(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자료 요구, 부과 고지서 송달 입증 등) 받

생 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이 발령되기 전에 재정과로 인계된 체납 세외수입 중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은 개정 지침에 의해 인계 제외대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인계인수 시기와 방법) ① ~ ③ (생략)</p> <p>④ 체납 자료의 인계인수는 <u>세외수입 전산시스템</u>으로 이관 처리한다.</p> <p><신설></p> | <p>제4조(인계인수 시기와 방법)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세외수입 정보시스템</u>으로 이관·처리한다.</p> <p>제4조의2(체납액 징수의 권리와 의무)</p> <p>① 제4조에 따라 해당 부서장과 재정과장이 사무인계인수를 했더라도 재정과장은 해당 부서장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장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p> <p>② 해당 부서장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자중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나 해제, 각종 인·허가의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p> |
| <p>제5조(제외대상)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 및 「감사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인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계류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p> | <p>제5조(제외대상) ①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계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송계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건 신청이 개시된 경우 |

식에 따라 재정과장에게 인계한다.

- 3. 납부기한 만료 후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 4. 교부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공매가 신청된 경우
- 5. 부과취소 대상이거나 착오부과 된 경우
- 6.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7. 납세자 등록번호가 없는 등 부과자료 불확실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과목은 인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 채권관리관이 관리하는 채권
- 2.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 3. 해당 부서장이 체납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회계과목

제6조(체납액 징수업무 연속성 유지)

① 해당 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외수입 부과 및 이관하지 않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업무소홀로 인하여 방치·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이관된 세외수입

<신 설>

체납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민원(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근거자료 요구, 부과 고지서 송달 입증 등) 발생 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